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第11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4月20日(金) 10時35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10時35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오늘 이렇게 맑고 밝은 건강한 모습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를 개최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사업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의 생업까지 뒤로 한 채 지역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행정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을 통하여 주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李星世 保健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위원장은 요즘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자주 상기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본 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함께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역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시간의 흐름에 마음만 마냥 조급할 뿐입니다. 하

지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 의정활동을 쉼 틈도 없이 바빠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늘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만 종로구민의 복리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으로 꽃필 것입니다. 앞으로 두달 여 남은 본 위원회 활동에서도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지혜롭고 단합된 모습과 성숙된 모습으로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는 4·19혁명 41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젊은 학생들과 민주 시민이 불의와 부정부패에 맞서 항거했던 역사적인 날로 이러한 4·19혁명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지표가 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의사 결정이 존중되고 보장받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 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은 모두가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에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우리가 여망하는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더 헌신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직접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안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이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한 식견으로 대안 제시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4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 2건은 모두 연관된 내용의 보건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35分)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星世 保健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保

健所長 李星世입니다. 이렇게 지금 뵈오니 玄壽漢委員님께서 부목까지 하시고 불편하신 중에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력하시고 특히 보건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이미 규정된 위임사무 중 약국 및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합리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약국 및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무로서 종전에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국관리자를 해당 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하였던 것을 해당관청의 승인없이 약국 개설자가 지정하도록 규제 완화됨에 따라 약국에 관한 위임사무 중 “약국관리약사의 승인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며 약사법 제42조의 의료용구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위임사무 내용 중 ‘등록’을 ‘신고’로 정비코자 합니다. 현 법령에 맞게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星世 保健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4월 6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

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약사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별표 제3호 위임사무 중 '자'목의 약국 관리 약사의 승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약사법 제19조제2항이 개정되어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국관리자 지정시 해당 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승인없이 지정하도록 완화됨에 따른 것이며, 별표 제4호 '가'목 '의료용구 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을 '의료용구 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된 사항변경'으로 하고 '나'목의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를 '신고취소 및 업무의 정지'로 '등록'을 '신고'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약사법 제42조제1항이 개정되어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관내 약국 및 의료용구판매업소의 현황은 약국이 201개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용구 판매업은 269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뒤 페이지의 관련법규는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된 약사법의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星世 保健所長!**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종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시행에 따라서 건강보험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원의약국에서 조제시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의약국 약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약분업시행 이전에는 우리 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규정에 의거해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진료 및 의약품 조제투약비를 면제하여 무료로 진료하였으나 의약분업시행 이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진료환자도 의약분업이 적용되어 보건소에서 조제투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해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 진료시에는 처방전에 의해 원의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케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련 민원의 폭증이 예상되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원의약국에 지불하는 본인 부담액 중 일부 금액 1,000원을 서울시예산으로 지원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의약국 약제비 지원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약제비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시책추진 및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 (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星世 保健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4월 6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보건소 처방전에 의한 원의약국에서 조제시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노인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원의약국 조제 약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건강보험증 소지환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의약국의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금액을 조제한 원의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2000년 6월 21일 서울시 지침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의약국 약제비 지원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5세 이상 환자 약제비 지원계획은 1건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약제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나와 있는데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1,000원입니다. 이 경우에 1,000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돈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은 약제비 총액의 30%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원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 지원액을 보면 총 6,811건에 747만 6,000원을 지원했고 2001년 예산액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1,775만 4,000원이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제비 지원절차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65세 이상 의료보험 환자를 표시해 가지고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여하고 약국은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지원액 1,000원을 처방전 사본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 이 경우 보건소는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조제약국 주인에게 온라인 송금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전액 면제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원외약국의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노인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건당 약제비 총액이 1만원 이상일 때는 본인부담액이 30%임에도 이 중 1,000원만 지원하고 잔액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지원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설규정 중 지원금액을 약제비의 일정금액으로 한 것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李星世 保健所長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노인복지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전액 면제를 했었는데 오히려 의약분업이 되면서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을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전액 면제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데 건강을 지키는 우리 종로구 보건소의 소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保健所長 李星世**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종전에는 모든 게 면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1만원의 약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

나 이게 복지로 가는 어떤 과정에서 좀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타당하다 고 봅니다.

○宣相善委員 물론 양질에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결과가 되었 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노인복지를 지향하는 21세기 현실로서는 참으로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 런 생각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 로 어떤 예산이 더 반영이 된다면 전체적인 면제 를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지 차원에서 전액 면제가 되 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강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보건소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관내에서 요즘 근자에 의약분 업 때문에 저도 병원을 근자에 가봤습니다마는 병 원을 이용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인 상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자가 훨씬 차라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용도 전자 같으면 의료보험증을 가져가면 얼마 안된 것 같은 데 그런 것도 있고 조제하는 데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처방전을 가지고 그런 불편도 있 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이용하면 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했다, 싸게 했다 하는

생각을 근자에 와서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 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 는 병·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보건소가 거의 40%를 커버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를 이 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건소 폐지론까지 주장하는 일부 계층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령인구들은 거의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출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저 는 여쭙습니다. '보건소가 병원하고 어떻게니까?' 하면 그저 내 집보다도 더 편하다고 하는 그런 말 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의약분업 때문에 어려움 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국민 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명감을 가 지고 하실 때 더욱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 람 때문에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본소하고 동 부진료소가 있는 중간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를 활 용할 때 차편을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보건 소에서 순회하는 진료차가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교통을 이용해서 거기를 활용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동부 진료소는 우선 창신·송인지역의 취약지역의 주 민들을 위해서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쪽 명륜 동, 이화동 이런 데는 저희가 좀 취약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 또 거기 명륜동은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 러 가지 보건교육과 모자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 습니다.

○鄭泰淳委員 노인들이 만약에 보건소를 이용할 때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몸이 불편하니까 거기 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왕진을 해주십 사 하는 부탁을 합니까? 민원인들이 올 때

○保健所長 李星世 아주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연락을 하면 접수를 해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줍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게 합니다.

○鄭泰淳委員 여하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 금 전에 말씀처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

들이 더욱더 증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의약과장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했을 때 약을 줬잖아요? 그때 약제비 수가를 받았죠?

○醫藥課長 丁基聲 무료였습니다. 65세 이상은

○玄壽漢委員 의약분업 이전에

○醫藥課長 丁基聲 의약분업 이전에도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투약비가 무료입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지금 사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보건소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를 65세 이상도 약값이 본인 부담이 될 것 아니에요?

○醫藥課長 丁基聲 그런데 내용은 법 개정사항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1만원 이하는 1,000원을 본인 환자 부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1,000원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1만원 이하는 전 진료과정과 동일하게 없습니다. 무료고 그 다음에 1만원 이상은 거기에 30% 정도 총 약제비에 대해서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자가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도와주는 것보다도

○醫藥課長 丁基聲 그런데 그 원인은 저희들이 시에 가서도 회의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65세 이상 환자들을 계속 옛날 식으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도 지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약분업 초기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玄壽漢委員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겠네

○醫藥課長 丁基聲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이 끝 될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예, 그 다음에 약제비 지원 절차가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진료소에 지원을 청구했을 때 그러면 1,000원이라는 돈을 약국으로 줘니까? 내가 A약국에 가서

○醫藥課長 丁基聲 원의 처방에 의해서 나갔으면 투약을 했으면 1만원

○玄壽漢委員 A약국에서 처방을 받았을 때 그 A약국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1,000원을 준다?

○醫藥課長 丁基聲 처방전 사본을 첨부해서 청구하면 온라인으로 그쪽에 지급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쭙볼게요.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규제 완화, 규제완화 해가지고 혼선된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의약과장이나 소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약사법 제19조에 약국의 관리의무 중에서 본인이 하다 본인이 못할 경우에 약사 또는 한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게끔 또 완화시켰거든. 그런데 완화시키기 전에도 약사가 개설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아무나 약을 팔고 있거든요. 딸도 팔고 남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심지어는 친척 갖다놓고 파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예요. 현재 그렇게 해왔고.

○醫藥課長 丁基聲 현재도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데요

○玄壽漢委員 대부분입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물론 약국 개설자는 약사 면허 소지자만 개설하고 의약품 판매 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玄壽漢委員 그러면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면허가 없는 딸이나

아들이나 남편 또 친척들이 파는 경우가 많거든

○**醫藥課長 丁基聲** 그래서 우리가 정기감시가 있고 수시감시 또 진정건 이런 감시에 의해서 감시단을 총동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위법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 소리는 한두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생활 10년 동안에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수시로 감독하러 나간다, 조사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규제 완화를 시킨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상위법에서 완화시켜주고 뭐 하라고 하면 밑에 있는 보건소는, 감독기관이 보건소인데 인력 한계도 있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겠느냐, 또 단속해서 된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느냐는 거야.

○**醫藥課長 丁基聲**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약업소라든가 의약·의료업소 지도감독을 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특별감시단을 시나 복지부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의약분업에 의한 업무량이 폭주되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금 약사법이 안정이 되면 보건소나 서울시의 감시하는 분들이 활력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리라고 봅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약사 면허 소지자는 약사감시원이나 의료감시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업에 예를 들어서 의약·의료업이나 약업에 종사한 지 1년 이상이 된다면 행정직이나 보건직도 감시원 직이 발급되고 인정되면 약사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규정상에

○**玄壽漢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부에서 말뿐이고 이것을 완화시키고 규제만 정해놨지 실질적으로 되어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보건소

자체도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나간다고 해도 이백 몇 십 회 나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

○**醫藥課長 丁基聲**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처분으로 해서 42건 정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36건 정도 했고

○**玄壽漢委員** 36건했으면 그 처분이 어떤 규정이에요? 영업정지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이 약사법 위반은 업무정지도 있고 고발도 있고 경고처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다음번에는, 지금이 2001년이죠? 다음에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자료를 어느 약국은 어떻게 처벌했다 뭐다 이런 근거를 좀 가져와요.

○**醫藥課長 丁基聲**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지만, 이것은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약분업이 되고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쉽게 얘기할게요. 가스활명수 부채표인가 제일 유명하죠? 제일 오래된 것 그것이 150원 하던 게 지금은 500원이야. 그런데 약국마다 달라요. 서울시내 제일 싼 데가 박스로 10개당 사는데 3,000원이고 또 5,000원이야. 어떤 데는 4,500원이고 왜 약국마다 다르냐고 했더니 그럴 수도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제라고 하면 웨스탈이라고 하는데 큰 병원에서는 웨스탈을 안주고 다른 회사 것을 조제해주는 모양인데 약국마다 약값이 다른 것은 왜 그렇게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100원짜리가 300원 500원을 하느냐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국마다 가서 약사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그럴 수도 있다, 뭐가 그럴 수도 있는지

○**醫藥課長 丁基聲**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은 다양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여

러 가지 제약회사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출하되면 정상적인 값을 받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제약회사 실정에 따라거나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덤핑으로 해서 팔고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업소에서도 실질적으로 값이 300원이면 300원 균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무슨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요인들이 발생되면 덤핑해서 팔고 난매하는 식이 되어왔죠.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상당히 유통과정에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값이 안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더욱더 이게 유통과정이 안정되어 가지고 약값이 거의 균일하게 될 것이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약사법이 빨리 고쳐져서 약품의 유통과정에서 질서를 확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안전에 벗어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같은 약이야, 같은 약을 내가 종로 바닥하고 서대문 바닥하고 약국을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약값을 어디에서 얼마 받고 어디에서는 얼마 받는지, 제일 싼 데가 어딘지. 그런데 약국마다 전부 달라요. 우리 종로5가인가 거기 가면 큰 약국들 많이 있지 그곳도 제멋대로야. 싼 데가 차라리 서대문구 변두리 여기가 그래도 가격이 좀 싸요. 또 대형병원하고 결탁을 했든지 뭐를 했다고 병원 원의 처방을 하는 데는 대형약국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사람들도 막말로 얘기해서 도둑놈들이야. 처방전 외의 약 이것도 제멋대로야. 그런데 그것이 약국마다 전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작년 10월 이후죠. 10월 이후부터 제가 종로 바닥하고 서대문 바닥은 웬만한 약국은 다 가봤어요. 같은 약을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지 제약회사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 권한이 있는 보건소에서 할 건지 이것도 어떤 것이 기준이 서야 될 것 아니요? 말

로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꿀탕 먹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그래서 이 차제에 여쭙보는 게 솔직히 그것이 왜 그러냐, 제약회사에서 더 받아서 그러느냐 혹은 약국에서 제멋대로 더 받는 거냐 그것은 처방전은 어떻게 나오냐면 처방전에도 소화제가 다 끼어요. 처방전에 웬만한 환자 소화제가 다 깎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퇴원한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죽 먹는데 이상하니까 소화제 하나 더 달라고 하니 간호사는 뭐라고 하나면 의사 처방전이 없어서 소화제를 하나 더 안 갖다줘.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된대. 나는 소화제 두 알만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싼데 왜 우리가 처방전 외 처방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려고 하면 그렇게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하고 어디에서 통제를 해야 되느냐고 여쭙보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분 중에서 솔직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醫藥課長 丁基聲 의약분업 이후 유통과정에 대한 약값 전체는 제일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그것을 엄격히 확립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정립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과 같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싼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비싼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비싼 값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비싸게 지금 현재 玄委員님께서 사신 그것이 정상적인 값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값보다 싼 것은 거의 덤핑, 자본금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덤핑하는 것은 그 값이 정상적인 값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도 생산 능력은 있지만 많이 소비를 해서 자금유통이 잘 되면 되는데 안되면 그 제품을 다시 덤핑해서 팔고 그렇게 되면 또 시중에 약값이 싸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론 지도 계몽을 해서 약값을 통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

지만 정말 유통과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유통과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어느 정도 약값에 대해 정립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답변 중에서 유통과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산물까지 나왔어요. 농산물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 전라남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거리가 머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면 가까우니까 갖고 와. 그러나 이 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화제 중에 웨스탈이라는 약이 어느 회사건 지는 몰라도 우리가 '소화제' 하면 웨스탈로 전부 알아요. 그러면 그만큼 전국에 퍼져있고 그만큼 생산이 잘되고 잘 팔리는 약이 왜 최고로 비싸며,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면 500원짜리 소화제 부채표 활명수 그런 옛날부터 유명한 약이야, 전국 어느 약방이나 다 가있어. 그런데 그것이 최고로 비싸. 그 다음에 정부에서 슈퍼마켓, 구멍가게에서 팔도록 또 허용했다. 또 거기에서도 팔아. 약방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큰 약방이 500원이고 한 개 사려면 구멍가게 식품가게도 거기도 500원 이야. 그러면 복지부에다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의약품의 가격 통제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인 보건소에서 유통과정의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유통과정을 단속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단속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뭐냐고요?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약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많이 생산하고 같은 유형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건소 인원을 가지고 그 유통과정을 정립시킨다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사법이나 수시감시를 할 때 항상 약값 안정을 위해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하는 업자들이 어느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자본금이 부족하다든지 유통과정에 어떤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덤핑이 나온다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애깁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밑에서 일하기가 어려우면 서울시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걸 통일시키거나 단속을 해달라든지 그것도 안되면 국회에다 건의를 할 뭐가 있어야지 손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하면

○醫藥課長 丁基聲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복지부에다 우리 지역은 어느 제품은 어느 수준이라는 보고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玄壽漢委員 요새 지역경제과인지 구청에서 조그마한 동네마다 다니면서 구멍가게도 가격표를 붙이라고 전부 몇 번씩 단속을 나왔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좀 싸게 파는데 10% 디시해서 팔고 가게마다 다 다르잖아요. 10% 디시하는 데도 있고 5% 디시해서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모조리 싸붙이라는 거야. 그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본 데도 있고 안 물어본 데는 모르겠다. 구청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일개 식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격표를 붙이라고 이런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문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되니까 이번에 조금 본 안건 하고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더 이상 답변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하시든지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의약품장님이시죠? 의약품장님도 역시 우리 종로구 집행부 고위 간부들같이 말씀을

참 너무 잘하십니다. 아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착오를 가져왔으며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잘못을 지금 정부로 돌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 산하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같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 다루어왔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약국에 관련되어 문제된 것 여러분들이 단속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잘못된 것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같이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말만 번드르하고 말이지 지금 우리 玄委員님이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규제완화가 되었으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방향을 정말로 잡아서 말만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바꿔보라는 애깁니다. 그러한 내용을 본질을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길게 늘어놔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우리 20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李星世 保健所長님께서는 의약분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종전과 지금 개정 후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가 보완된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었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모든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고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보완 사후관리 내지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개정까지도 있으리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은 좀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宣相善委員** 일단은 보건소장께서는 의약분업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네요? 결론은 어떤 준비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일단 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피력은 의약분업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保健所長 李星世** 잘못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정책이었는데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을 해도 뭔가 사후관리는 상당히 돌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宣相善委員** 물론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엔 부작용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약분업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잘못된 것도 이렇게이렇게 나간다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민들 모두는 똑같이 갈 거란 말입니다. 종로구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는 그리 좋지는 않네요. 자꾸 책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그래도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더 잘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약과장께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가족이 딸이나 동생이나 친지 중에 아무나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발은 36건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행정조치를 한 거죠?

○**醫藥課長 丁基聲** 예, 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약국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굉장히 많다 상당히 많다고 답변을 했죠? 그렇게 약사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밀비제하다고 하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약국개설자가 약국관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이라든지 가족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담당자의 판단으로서 지도계몽사항으로 지도하고 있고 진짜 무자격자가 완벽하게 그것을 상습적으로 잘못해서 처리할 때는 고발 조치하는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약국들이 그렇게 한다고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약국은 누가 단속을 합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우리 관내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의약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색출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무면허 약사가 조제해줘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색출을 못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과장께서는 그런 약국이 하나도 없도록 철저히 단속한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인정을 하고 있으면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셨어요?

○**醫藥課長 丁基聲** 예,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차제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군·구 단체장을 해썬 것을 보건소장에게 다 위임하는 것이죠? 소장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유무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용구판매업을 등록제 “등록 몇 호” 나올 건데 신고제면 우후죽순처럼 신고만 하면 의료용구판매업을 내주겠네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전에는 등록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뀌니까

○**宣相善委員** 등록을 하면 등록 몇 호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거리 제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신고만 하면 그냥 내주는 거죠?

○**保健所長 李星世** 우선은 현장을 방문해서 장소가 알맞으면

○**宣相善委員** 이렇게 했을 때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우선은 좀더 철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宣相善委員**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전과 후에 이런 것을 보완 또는 좋다 이런 것을, 좋은 것을 개정해야지 나쁜 것을 개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더 좋을 것이다 가상적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李星世 保健所長님을 위시한 관리팀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에 보건행정팀들이 구조조정되었나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다른 분들은?

○**醫藥課長 丁基聲** 현재 과장들은 그대로 복직하고 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계장님들이 바뀌신 분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劉燦鍾委員** 과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과장이 세 분입니다.

○**劉燦鍾委員** 오늘 다 못 나오셨나요?

○**保健所長 李星世** 소관 부서만 나와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좀더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보건소 관련 조례개정이다 그러면 시민행정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나와서 공부하려니까 힘드네. 조금 전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종로구 관내의 약국 지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醫藥課長 丁基聲 예, 그렇습니다.

○劉燦鍾委員 소위 말하는 데스크맨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발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 내린 것이 36건 정도 됩니다.

○劉燦鍾委員 데스크맨들이 약국에서 주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그것은 약국개설자가 있으면서

○劉燦鍾委員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그런 부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醫藥課長 丁基聲 예.

○劉燦鍾委員 그런데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이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제일의 목적은 그거죠.

○劉燦鍾委員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의 위임사무를 맡아서 쉽게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시기상조다 뭐 개인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종로구 보건의 책임자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큰일날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얘기할 수 있으나 어떻게 중앙부처의 행정 위임사무를 갖다가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의약분업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잘못되었다 라기보다는 너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보완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니까 사후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보면 본래의 취지는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데스크맨 관리 시스템

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약의 오남용의 소지가 적도록 하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의약분업이 실시 중에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로구 보건행정의 책임자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기를 바라라고 다음에는 조례내용에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본인부담금의 1,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이 시스템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부분 1만원의 기준으로 했을 때 1만원 이하일 때는 1,000원을 지원금으로 부담을 해주고

○劉燦鍾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할 때 조제를 할 때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약국들이 자기들만 소유한 특수처방을 해서 특정약국에 가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보건소를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에 처방전을 전부 검토해서 처방전이 정말로 아무 동네나 아무 지역의 약국에 가서도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처방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劉燦鍾委員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나 다른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종로구에 속해있는 종로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그런 의무를 여러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문제의 전반적인 것은 거기에 우리 국민 모두 또는 우리 보건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이기 때문에 다소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더욱더 정진해 나가서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복지증진에 항상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東奎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醫藥課長님이나 保健所長님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말고 다음에 보건소의 이러한 조례개정이 있을 때 2000년이나 2001년 단속실적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동의 어느 약국 번지까지 해서 무엇을 위반, 정지면 정지, 과태료면 과태료 이렇게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건의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같아요. 지금동에 조그만 병·의원이나 평일에는 6시, 토요일에는 1시, 일요일은 쉬고 병이라는 것이 예고없이 나타나 이것도 전부가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 외에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먹거나 하면 나올 텐데 안 준다고, 모르는 사람이 가면 안 줘! 그런데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이상의 약을 다 조제해줘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강구해 주자 않으면 안돼요. 없는 사람들은 병나면 죽으라는 얘기 아냐! 처방전 없으면 약 안주니까 약국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은 조제해줍니다. 돈을 얼마를 받든 간에 이 문제를 잘 판단해서 가지고 보건소장이 서울시나 문화복지부 회의 때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안되면 국회의원들 때려잡아서라도 법을 고쳐라 이거야! 밤낮 말단만 조지저 말고 그것을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時43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李東奎 鄭泰淳 千相旭 玄壽漢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保健所長 李星世
醫藥課長 丁基聲

